

忠清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占有하거나 使用·收益하는 경우에 제23조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年間貸付料(使用料, 辨償金을 包含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前年度에 納付하였거나 納付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增加한 때에는 當該年度의 貸付料 引上率은 제23조의 規定에 不拘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增 加 率	貸 付 料 引 上 率
10% 以上 20% 未滿	$10\% + (\text{增加率} - 10\%) \times 0.3$
20% 以上 50% 未滿	$13\% + (\text{增加率} - 20\%) \times 0.1$
50% 以上 100% 未滿	$16\% + (\text{增加率} - 50\%) \times 0.06$
100% 以上 200% 未滿	$19\% + (\text{增加率} - 100\%) \times 0.03$
200% 以上 200% 未滿	$22\% + (\text{增加率} - 200\%) \times 0.01$
500% 以上	$25\% + (\text{增加率} - 500\%) \times 0.005$

附 則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公有財産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使用·收益하는 경우에 제23조의 規定에 의하여 산출한 年間 대부료(使用料·辨償金を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前年度에 納付하였거나 納付하여야 할 年間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貸付料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증 가 率</th> <th style="text-align: center;">貸 付 料 引 上 率</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 以上 20% 未滿</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 (\text{增加率} - 10\%) \times 0.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 以上 50% 未滿</td> <td style="text-align: center;">$13\% + (\text{增加率} - 20\%) \times 0.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 以上 100% 未滿</td> <td style="text-align: center;">$16\% + (\text{增加率} - 50\%) \times 0.0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 以上 200% 未滿</td> <td style="text-align: center;">$19\% + (\text{增加率} - 100\%) \times 0.0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 以上 500% 未滿</td> <td style="text-align: center;">$22\% + (\text{增加率} - 200\%) \times 0.0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 以上</td> <td style="text-align: center;">$25\% + (\text{增加率} - 500\%) \times 0.005$</td> </tr> </tbody> </table>	증 가 率	貸 付 料 引 上 率	10% 以上 20% 未滿	$10\% + (\text{增加率} - 10\%) \times 0.3$	20% 以上 50% 未滿	$13\% + (\text{增加率} - 20\%) \times 0.1$	50% 以上 100% 未滿	$16\% + (\text{增加率} - 50\%) \times 0.06$	100% 以上 200% 未滿	$19\% + (\text{增加率} - 100\%) \times 0.03$	200% 以上 500% 未滿	$22\% + (\text{增加率} - 200\%) \times 0.01$	500% 以上	$25\% + (\text{增加率} - 500\%) \times 0.005$
증 가 率	貸 付 料 引 上 率														
10% 以上 20% 未滿	$10\% + (\text{增加率} - 10\%) \times 0.3$														
20% 以上 50% 未滿	$13\% + (\text{增加率} - 20\%) \times 0.1$														
50% 以上 100% 未滿	$16\% + (\text{增加率} - 50\%) \times 0.06$														
100% 以上 200% 未滿	$19\% + (\text{增加率} - 100\%) \times 0.03$														
200% 以上 500% 未滿	$22\% + (\text{增加率} - 200\%) \times 0.01$														
500% 以上	$25\% + (\text{增加率} - 500\%) \times 0.005$														

<참고자료 1>

地方財政法 第92條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公有財産의 대부료 또는 使用料는 當該財産 評定가격의 연 100분의 3이상의 율에 의하여 算定하되,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令에서 公有財産의 使用料에 대하여 特別한 規定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法令에 의한다.<개정 90·11·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料 또는 使用料를 計算함에 있어서 재산평定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規定에 의한 재산평定가격은 使用·收益許可期間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의 規定에 의한 재산평定가격은 결정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適用할 수 있다.

<개정 90·11·6>

1. 土地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법률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基準으로 하여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比較表를 使用하여 算出한다.

2. 土地외의 財産의 境遇에는 第96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산출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제1항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또는 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90·11·16>

1. 경작목적의 농경지
2. 목축·광업·채석목적의 재산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4. 청사의 구내재산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요율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참고자료 2〉

地方財政法 第92條

제23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年間貸付料 또는 使用料率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公用·公共의 목적과 새마을事業에 使用할 計算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規定에 의한 耕作目的으로 使用하는 土地의 貸付料는 貸付面積에 대하여 地方稅法 제197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所得 金額의 1000분의 150또는 土地課稅市價標準額의 1000분의 25중 低廉한 金額으로 한다.

③영 제92조 제3항 제2호의 規定에 의한 鑛業, 採石의 目的으로 貸付 또는 使用許可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貸付料 또는 使用料로 징수한다.

1. (삭제)

2. (삭제)

3. 鑛業, 採石을 위한 貸付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地型變更으로 인하여 장래 山林으로 利用하지 못하는 區域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林產物價格을 貸付料 또는 使用料에 追加하여 徵收한다.

④영 제9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年間貸付料 또는 使用料率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區內財産으로서 공익상 必要하거나 公務員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山林法施行令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貸付料率 또는 使用料率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⑥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地方自治團體 所有가 아닌 住居用 建물이 있는 토지 또는 特定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規定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土地의 使用料率 또는 貸付料率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規定에 不拘하고, 道知事は 貸付料率을 따로 정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財産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